

<붙임 2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-0503호

< 2020년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『2020년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』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8월 25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1. 제도 개요

□ 목 적

- 과기정통부 R&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

□ 주요내용

-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- *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 또는 보통이상)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
-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은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’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

추진근거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3호 아목
- (계약예규)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-46호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”

2. 신청 자격 및 방법

□ 신청대상

○ (필수요건)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
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'15.1.1.~'20.7.31.)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
*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

※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, 또는 대학·출연(연)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
□ 신청 및 접수

○ (접수기간) '20. 8. 25.(화) ~ '20. 9. 24(목) 18:00까지

○ (신청방법) 제품등록* 후,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 이메일로 제출

*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
※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며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허용

| 접수처 | 연락처 | 이메일 주소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| 02-3460-9184 | innovative@koita.or.kr |

□ 신청서류

○ (제출방법)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(파일명 : 신청기업명)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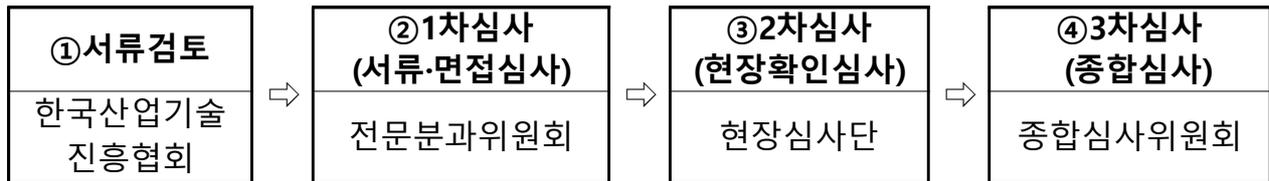
| 번호 | 제출서류 | 구분 | 서식 |
|----|---|-----|-----|
| ① |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| 필수 | 첨부1 |
| ② |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/보통이상) 확인 증빙자료 (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) | 필수 | |
| ③ |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| 필수 | |
| ④ | 제품 규격서(자기점검표,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) | 필수 | 첨부2 |
| ⑤ | 신청제품 설명서 | 필수 | 첨부3 |
| ⑥ |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(인증, 허가의 획득, 신고, 검사의 통과, 관련 서류의 제출 등) 이행 증빙자료 | 필요시 | 첨부4 |
| ⑦ | 지식재산권, 실시권 증빙, 한국인정기구(KOLAS)에서 인정한 공인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| 필요시 | |

3. 추진 및 평가절차

□ 제도 추진절차

| 주요내용 | 담당기관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품등록 | 신청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※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」제 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|
| ↓ | | |
| 신청 | 신청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|
| ↓ | | |
| 제품 평가·심사 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서류 검토 ■ 혁신성 평가(서류심사, 현장심사, 최종심사) |
| ↓ | | |
| 지정예정공고 및 조달청 통보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 공고 ■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 |

□ 평가절차



- ① (서류검토)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- ② (1차심사(서류·면접심사))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(대면설명 및 질의)을 통해 신청제품을 심사
 - * 1차심사 일정,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
- ③ (2차심사(현장확인심사))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제품의 성능,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
 - ※ 현장심사를 통해 1차심사 결과 확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불인정
- ④ (3차심사(종합심사))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, 2차심사의 결과가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 여부 선정
 - ※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

4. 평가기준

□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

- 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’ 제14조에 따라, 1차심사(서류·면접 심사)의 평가점수*가 70점 이상인 제품을 2차 심사에 상정
 - * (평가점수산정)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
- 2차심사(현장확인심사)에서의 3차심사(종합심사) 상정여부, 3차심사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

< 참고 -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차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>

| 평가 항목 |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공공성 평가 (30) | 공공현안 부합성(1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공의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*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인지 * 공공의 이익 증진 및 기여, 국민 생활의 편리성 증대, 국민 생명·안전 보호, 시대·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 속 불편 해소 등 |
| | 공공구매 필요성(1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당 제품이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초기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 제품인지 |
| | 현안의 시급성(1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,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과 관련된 제품인지 여부 |
| 혁신성 평가 (40) | 기술·제품 신규성(15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장에 없는 신제품인지,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선한 제품인지 여부 |
| | 기술·제품 탁월성(15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품 특성이 뛰어나고, 제품 특성에 핵심기술이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* 여부 *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, 제품에 핵심기술이 적용된 비중 정도 |
| | 기술·제품 신뢰성(1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|
| 사업화 효과 평가 (30) | 사업모델 적합성(1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요,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|
| | 시장창출 가능성(1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련 제품군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시장을 고도화·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|
| | 파급효과 (1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품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, 민간으로 파급되어 관련 제품군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 정도 |

5. 문의

| 기관명 | 연락처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| 044-202-4724 | 제도 문의 |
| | 044-202-4739 | |
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| 02-3460-9025 | 세부 운영절차·일정 문의 |
| | 02-3460-9184 | |